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373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8.
발의자 : 곽상언 · 김윤 · 이건태
이재관 · 김원이 · 박희승
채현일 · 박민규 · 허성무
이상식 · 윤종군 · 정태호
장종태 · 소병훈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설치 · 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,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, 전기사용자의 권리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,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 · 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, 기후

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·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3조, 제56조 및 제60조 등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심의(허가권자가 시 · 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”을 “심의 · 의결(허가권자가 시 · 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심의를”을 각각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후단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3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“심의를”을 각각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43조제3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43조의2제3항 중 “심의를”을 “심의 · 의결을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사항의 심의와”를 “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고”로, “기후에너지환경부에”를 “대통령 소속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”를 “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 포함한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”를 “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, 그 밖의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하고”를 “심의 또는 의결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심의사항으로”를 “심의 · 의결사항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”을 “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”를 “제1항제14호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리

보호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법률·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
사항

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률·제도
및 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.

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0조(사무처) 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
에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상임
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.

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기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
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
법에 따라 새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
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전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
본다.

제3조(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

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한 허가 등 행정처분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전기사업의 허가) ① (생 략)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 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 조에 따른 전기위원회(이하 “전기위원회”라 한다)의 <u>심의</u> 를 거쳐야 한다. ③ ~ ⑥ (생 략)	제7조(전기사업의 허가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심의 · 의 결을</u>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·합병 등) ① (생 략)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허가권자가 시·도지사인 경우 에는 전기위원회의 <u>심의</u> 를 거 치지 아니한다.	제10조(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·합병 등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심의 · 의결을</u> --- -----.
1. ~ 3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업허가의 취소 등)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	제12조(사업허가의 취소 등) ① - 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<u>심의</u> (허가권자가 시·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14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) ① (생략)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<u>심의</u> 를 거쳐야 한다.	제15조(송전·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심의 · 의결</u> 을-----.
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(생략)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<u>심의</u> 를 거쳐야 한다.	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심의 · 의결</u> 을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p>기위원회의 <u>심의를</u> 거쳐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43조의2(중개시장운영규칙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생략) 	<p>-----<u>심의 · 의결을</u>-----</p> <p>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3조의2(중개시장운영규칙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현행과 같음)
<p>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<u>심의를</u> 거쳐야 한다.</p>	<p>③ -----</p> <p>-----<u>심의 · 의결을</u>-----</p> <p>----.</p>
<p>④ (생략)</p> <p>제53조(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<u>사항의 심의와</u>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(裁定)을 위하여 <u>기후에너지환경부에</u> 전기위원회를 둔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3조(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</p> <p>-----<u>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고</u>-----</p> <p>-----<u>대통령 소속으로</u>-----</p> <p>----.</p>
<p>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9명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</p>	<p>② -----</p> <p>-----<u>9명의 위원으로 구성</u>-----</p> <p>-----<u>하되,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.</u>-----</p>
<p>③ 전기위원회의 <u>위원장은 포함한 위원은</u>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</p>	<p>-----<u>위원장은 대</u>-----</p> <p>-----<u>통령이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</u>-----</p>

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.

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.

1. ~ 13. (생 략)
14.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

<신 설>

15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
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

임명 또는 위촉하며, 나머지 4

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-----
--.

④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, 그 밖의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
---심의 또는 의결하고-----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-----
--심의 · 의결사항으로-----

14의2.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법률 ·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
1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-----

② -----제1항제14호
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

•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제60조(조직 및 운영)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률·제도 및 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.

제60조(사무처) ①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.
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